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27일, 강준현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사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6.3.3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4.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
결(원안가결)

제2차 정무위원회(2026.4.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준현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

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민국)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4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 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u>9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그 중 <u>4명</u> 은 비상임위원으 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11명</u> ----- ----- <u>5명</u> ----- ----. ② ~ ④ (현행과 같음)